

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속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17일, 남영숙 의원 외 10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

(2023년 8월 30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남영숙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수산물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하여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신속·정확한 검사결과의 주기적 공개 및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을 규정함(안 제5조의2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진영)

가. 본 개정 조례안은

-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등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검사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제공하여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함.

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

제5조의2(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)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를 누리집(homepage), 모바일 앱(mobile app)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지역별, 시기별, 어종별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한 명예 수산물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다..

-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를 규정하여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더불어,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을 통해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. 종합 검토결과

-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 최근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유해성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임.
-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를 투명하고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.

- 금번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수산물의 안전검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, 수산물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제3항의 “주기적”이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판단되는 바, 조사 결과 제공 시기를 주1회 또는 매주 수요일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서석영 의원 : 지난 25일 포항에서 ‘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’이 구성되어 발대식을 가졌다는데?
- 김중권 본부장 : 8월 25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및 검사과정의 공개를 위해 여성 30명으로 구성된 ‘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’을 위촉하고 발대식을 개최했음.

6. 토론요지

- 서석영 의원 : 민간 감시단의 목적과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“명예 수산물홍보단”을 “수산물 안전 모니터링단”으로 수정동의 발의

7. 수정안의 요지 : 불임참조

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3. 8. 30.

제안자 : 농수산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민간감시단의 명칭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목적과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5조의2 제4항 중 “명예 수산물홍보단”을 “수산물 안전 모니터링단”으로 수정함

3. 수정안 : 불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불임

5. 참고사항 : 없음

6. 수정안 본문: 불임

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의2 제4항 중 “명예 수산물홍보단”을 “수산물 안전 모니터링단”으로 수정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	수 정 안
<u><신 설></u>		제5조의2(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)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를 누리집(homepage), 모바일 앱(mobile app)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.	제5조의2(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) ① (개정안과 같음)
		② 도지사는 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상북도에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.	② (개정안과 같음)
		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지역별, 시기별, 어종별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	③ (개정안과 같음)
		④ 도지사는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한 <u>명예 수산물홍보단</u> 을 운영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산물 안전</u> <u>모니터링단</u> ----- ---

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 등)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를 누리집(homepage), 모바일 앱(mobile app)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지역별, 시기별, 어종별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한 수산물 안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개는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안전성조사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조의2(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) ①</u> <u>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를 누리</u> <u>집(homepage), 모바일 앱(mobile a</u> <u>pp)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</u> <u>공개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도지사는 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</u> <u>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상북도에서</u> <u>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</u> <u>뢰를 확보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지역</u> <u>별, 시기별, 어종별 정보를 포함하여</u> <u>야 하며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</u> <u>다.</u> <u>④ 도지사는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</u> <u>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홍보</u> <u>하기 위한 수산물 안전 모니터링단</u> <u>을 운영할 수 있다.</u>